

병력(病歷)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※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[]란에 √표시를 하며,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10일
(1) 귀하는 정신분열증·정동장애(情動障礙)·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		[]있음 []없음	
(있는 경우)	병명	치료병원		
	치료개시일	치료종료일		
(2) 귀하는 경련성질환(간질)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		[]있음 []없음	
(있는 경우)	병명	치료병원		
	치료개시일	치료종료일		
(3) 귀하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 받거나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?			[]있음 []없음	
(치료사실이 있는 경우)	병명	치료병원		
	치료개시일	치료종료일		
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	단속일시	단속기관		
	위반행위			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귀하

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
본인은 허가관청이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13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 결정사유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관 중인 본인의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치매, 정신분열병, 분열형 정동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, 재발성 우울장애, 정신 발육지연, 간질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.	
년 월 일	
동의인	
(서명 또는 인)	
유의사항	
1. 기재하신 내용은 소지허가(갱신) 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13조에 따른 결정사유 등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	
2.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총기가 경찰관서에 보관 조치될 수 있습니다.	